

11.12 2만 상경·노조법 개정 총력투쟁 결의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조 결의대회 ... “자본·정권 총력 방어 단결 투쟁으로 뚫자”

금속노조가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2만 조합원 상경 조직화와 노조법 2·3조 개정,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방위산업노동자 쟁의권 확보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 비정규직 철폐, 윤석열 정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재벌·대기업만 살리는 정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신냉전, 물가폭등, 재벌·대기업 위주 정책 등 엄중한 정세임을 지적하고, “지지율 20%인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 김문수를 경사노위에 앉혀 위험천만한 노동개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한 판 큰 싸움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노동자가 상경한다”라면서 “금속노동자 2만



명이 상경하면 10만 노동자대회를 성사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우조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조합에 유리한 정세가 열렸다”라며 “11월 12일 10만 노동자 결집의 힘으로 12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노동 3권을 쟁취하자”라고 강조했다.

투쟁사에 나선 이상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경총과 전경련은 노동자를 불법으로 착취한 밥그릇을 뺏길까 봐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짓 선동과 언론 호도로 막으려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자본을 비호하며 한술 더 뜨고 있다”라고 호통쳤다.

이상규 지회장은 “자본과 정권의 총력 방어에 맞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단결한 투쟁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자”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휘청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직접 투

쟁과 노동자 계급이 다 같이 외치며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을 바꿨다”라면서 “더는 눈치 보고 옆을 보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지회장은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휘청지회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손배 폭탄 방지법 · 진짜 사장 책임법 만든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 “모든 노동자와 미래 세대 위한 법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 33조에 명시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면서 모든 노동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다섯 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액 470억 원은 시급 1만 원 남짓인 하청노동자 임금 400년 치에 해당하는 거액이다”라고 규탄했다.

박석운 대표는 “쟁의행위 손해 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밝혀진 대로 자본이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손배 폭탄 방지법 · 진짜 사장 책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의 권두섭 변호사는 “축



적된 대법원 판례를 노조법 2조 개정안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0년 현대중공업은 노조법상 사내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더불어 정리해고·구조조정, 권리분쟁, 경제·사회 지위 향상 투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화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권이 손해배상의 위협으로 무력화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민법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의 관점과 손해배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쟁의행위 등 쟁의행위의 원인, 노조 파괴와 조합원 괴롭힘 목적의 소권 남용 제한 등 손해배상 청구의 목적,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따져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3일 전원합의 재판에서 ‘헌법 33조 1항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제정 법률과 국가 개입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이 직접 법 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동본부는 10월 25일, 11월 2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11월부터 국민동의청원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발의 등 두 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